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37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윤후덕・이기헌・홍기원

최기상 · 김병주 · 박수현

정준호 • 백혜련 • 전진숙

김정호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 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04	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	
		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 시킨 것인지에 상관없	
		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무세
		나. 기타	3
		2. 반성(半成) 코크스	3
		3.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01.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01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무세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2.21란, 7202.29란, 7202.41 란, 7202.49란, 7202.50란, 7202.60란, 7202.91란, 7202.93란 및 7202.99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202 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무세

7202 29	기타	
	1.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	무세
	인 것 2. 기타	무세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무세
7202 49	것 기타	무세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무세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무세
7202 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	무세
7202 93	-silico-titanium) 페로니오븀(ferro-niobium)	무세
7202 99	기타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	무세
	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무세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5류 번호란의 75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1. 음극	3
	2. 기타	무세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08.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무세
	2. 가루	무세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5류 번호란의 854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545 | 11 | 노(爐)용 무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